

##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 안 번 호	527
------------	-----

제출년월일 : 1996. 9. 4.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변형관 외24인

### 1. 제정이유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안산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의정회는 안산시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2조)
-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안 제2조)
- 의정회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사회복지문제 연구,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안 제3조)
- 안산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안 제4조)

### 3. 관련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 경기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96.3.20 공포)
- 안양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96.7.18 공포)

### 4. 참고사항

- 가칭 사단법인 안산시 의정회 정관(안)

# 안산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안산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3. 사회복지문제 연구
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안산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假稱)社團法人 安山市議政會定款(案)

### 第 1 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안산시의정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조직) 본회는 안산시의회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조직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안산시의회 소재지내에 둔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第 2 章 目的 및 事業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안산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연구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第 3 章 構 成

제6조(구성) 본회는 안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역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징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
  2. 본회의 정관 및 규정 또는 재반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회원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 第4章 任 員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이사 : 4인이상 6인 이내
4. 감사 :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제14조(임원선임의 보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임원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第 5 章 會 議

### 第 1 節 總 會

제15조(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16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총회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회장은 소집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통지) 총회를 개최코자 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등을 기재한 회의 소집 안내서를 개별적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성원 및 의결)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②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재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한다.

제20조(의사진행) 본회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며 임기가 만료한 후  
첫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하게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폐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및 결산의 승인
6. 기타안건의 처리

## 第2節 理 事 會

제22조(구성) ①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정수는 7인이상 9인이내로 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통지) 이사회를 개최코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에는 전문으로 통지한다.

제25조(성원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26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을 요할때 총회기능을 대행한다. 단,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조달 방법의 연구와 결정
4.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의 처리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
5. 사무국장 임명 동의
6. 고문추대 동의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의결

### 第 3 節 諮 問 機 構

제27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본회는 고문을 두되 전임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또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현역 시 의회 의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 第 4 節 各 種 委 員 會

제28조(위원회 설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第 5 節 事 務 局

제29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③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준회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명예회장인 의장과 협의한다.

제30조(사무국 직제)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第 6 節 財產 및 會計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소유 부동산
- 나. 총회 의결로 결정한 재산

2. 보통재산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 나. 본회에서 판매하는 물건
- 다. 기타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2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회사금 및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대체를 포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하되 자산중 현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를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대체 보관할 수 있다.

제35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36조(결산) ①본회의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와 동시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끝한 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계결산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

제3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8조(회비)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임시조치)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에 본회가 새로이 중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第 6 章 定 款 變 更 等

제40조(정관변경) ①본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frac{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frac{3}{4}$ 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을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frac{2}{3}$ 이상의 동의를 받은후 본 회와 유사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기부한다.

제43조(보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附 則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